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4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2017. 3월부터 사근동 직영 중인 '사근동 작은목욕탕'을 민간위탁체(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1) 위탁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2) 위탁시설: 사근동 작은목욕탕

3)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선정

4) 위탁사무: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5) 운영예산: 109,280천원[인건비, 운영경비(공공요금·물품구입비 등)]

나. 시설현황

1) 규 모: 전체 146㎡(44평) [탕 52.8㎡(16평)]

2) 시 설: 탕, 사우나실, 샤워시설, 탈의실 등

3) 운영개시: 2017. 3. 13.(월) ~

4) 운영시간: 주 4일(월, 수, 금, 토) 08:00 ~ 17:00

5) 現 운영인력: 4명(공공근로자)

6) 이용요금: 4,000원(※경로우대·장애인·수급자 등 감면 요금 2,000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1)「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운영)

2)「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1) 현재 동 직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2개월(12월/1월) 간 근로자 공백이 발생

2) 목욕탕 운영시간 조정 등 각종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을 통해 목욕탕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운영)

2)「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예산조치

1) 소요예산: 109,280천원(구비)

2) 세부내역: 인건비(46,656천원), 운영경비 및 일반관리비(62,624천원)

3) 예산확보: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정

< 관 련 법 규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시설관리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10. 19.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7. 10. 20.

다. 상정일자: 2017. 10. 30.

(제23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2017. 3월부터 사근동 직영 중인 '사근동 작은목욕탕'을 민간위탁체(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1) 위탁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2) 위탁시설: 사근동 작은목욕탕

3)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선정

4) 위탁사무: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5) 운영예산: 109,280천원〔인건비, 운영경비(공공요금·물품구입비 등)〕

나. 시설현황

1) 규　　모: 전체 146㎡(44평) 〔탕 52.8㎡(16평)〕

2) 시　　설: 탕, 사우나실, 샤워시설, 탈의실 등

3) 운영개시: 2017. 3. 13.(월) ~

4) 운영시간: 주 4일(월, 수, 금, 토) 08:00 ~ 17:00

5) 現 운영인력: 4명(공공근로자)

6) 이용요금: 4,000원(※경로우대·장애인·수급자 등 감면 요금 2,000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운영)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1) 현재 동 직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2개월(12월/1월) 간 근로자 공백이 발생

2) 목욕탕 운영시간 조정 등 각종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을 통해 목욕탕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운영)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예산조치

1) 소요예산: 109,280천원(구비)

2) 세부내역: 인건비(46,656천원), 운영경비 및 일반관리비(62,624천원)

3) 예산확보: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정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내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체를 선정·운영코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임

○ 장기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는 목욕탕을 민간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단, 목욕탕 운영 및 유지관리에는 매년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목욕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 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